

의안번호	제 300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344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1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
----------	-----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 설 : 19건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등(2건)
- (환경정책과) 산업단지 외 대기 1~2종 사업장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17건)

- 삭 제 : 24건

<권한 회수(시장·군수 → 도지사)>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허가(1건)

<권한 환원(도지사 → 환경부장관)>

- (환경정책과) 유독물영업 등록 등 (12건)

<권한 이양(도지사 → 시장·군수)>

- (경제정책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사항(10건)
- (산림녹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1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6건

<근거 법조항 개정>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1건)
- (경제정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1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1건)
- (환경정책과)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변경) 승인(1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1건)

<위임 사무명 개정>

- (치수방재과) 하천예정지 용어 삭제(1건)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 정 과	1	· 도세 징수유예	지방세기본법 제80조
	2	· 도세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26조
	3	· 도세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4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 계 과	1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복 지 정 책 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5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6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 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보 건 정 책 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 의 약 안 전 과	1 2 3 4 5 6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 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 마약의 소매 보고 · 행정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 청문(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 과징금 부과(징수)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p>
경 제 정 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p> <p>같은 법 제5조제1항</p> <p>같은 법 제5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조</p>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p> <p>같은 법 제12조제7항</p> <p>같은 법 제13조제1항</p> <p>같은 법 제13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p>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p> <p>같은 법 제17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정책과	2	·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53조
	4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6항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	
5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제1항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	
6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6조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7조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9조	
7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8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다. 보고 및 조사 등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라. 개선명령	같은 법 제52조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6조	
	사.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같은 법 제9조, 제12조	
	아.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같은 법 제63조	
	자.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같은 법 제6조	
	차.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같은 법 제8조	
	카.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정정요구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 정책 과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p>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2조</p> <p>같은 법 제41조</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p>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8조</p>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2항</p> <p>같은 법 제18조제2항</p> <p>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p> <p>같은 법 제28조</p>
투자 유치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5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p>같은 법 제43조의3</p> <p>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같은 법 제55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60조</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p>
농업 정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p>농어촌정비법 제114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유 기 농 산 과	1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2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3	·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받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 미만) 개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4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5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축 산 과	1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2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물보호법 제19조 동물보호법 제20조 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법 제2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산림녹지과	1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3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4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5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6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예술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p>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p>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p>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항, 제20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건축문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p>주택법 제24조</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p>주택법 제16조</p>
군발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p>같은 법 제30조, 제50조</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아. 공동구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형발전과		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더. 운동장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며.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봉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5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6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7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8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균형 발전과	9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1조
	10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1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개발법 제4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도시개발법 제9조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12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13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체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6조의2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과	1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2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3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도로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4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라.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도로에 관한 조사 바.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도로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5	· 도유재산 용도폐지
	6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물류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p> <p>자동차관리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0조, 제21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p> <p>자동차등록령 제31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재김 명령등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아.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차.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같은 법 제3조, 제5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1조</p> <p>같은 법 제8조의2</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p> <p>같은 법 제34조의2</p> <p>같은 법 제35조의2</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p>같은 법 제83조</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p>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사용정지 	<p>같은 법 제89조</p>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제1항</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8조 제4항</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 물류과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지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8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9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방 재 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수 방재과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33조제6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감사의 회·준공검사·공사비예치	같은 법 제33조제8항
	12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4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16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
	17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18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9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의 식재	하천법 제38조제1항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치수 방재과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인가· 고시· 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하천법 제38조제4항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2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 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	같은 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 등의 사용· 수용	같은 법 제78조
	25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6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89조
	27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8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0	·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2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3	· 보상금의 공탁	같은 법 제8조
	34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5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같은 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4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9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10	•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 정책과	11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2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 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1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관계 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1 (생략)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 ① ~ ⑥ (생략)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의 서류 각 1부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제정책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4 (생략)

② ~ ③ (생략)

제14조(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4조(안전관리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 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생략)

제53조(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시·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산림복지과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환경정책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

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제33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 2 (생략)

② ~ ⑨ (생략)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20 (생략)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 ⑥ (생략)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8조

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합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1의2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정

1 ~ 3 (생략)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③ ~ ⑥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생략)

□ 유해물질관리법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⑧ (생략)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6 (생략)

③ (생략)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 ④ (생략)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치수방재과

□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